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대군인의 날 지정 및 전직지원금 금액 조정〉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9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명시	2
2. 제대군인의 날(10월 7일) 신설	8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4. 10. 31.
3. 회부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관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1.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명시

□ 개정안은 전직지원금의 지급 금액을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안 제18조의2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② (생략)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 -----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¹⁾

<전직지원금 지원 현황>

대상	인원	1인당 지원금액	금액 (2025년 예산액)
중기	2,506	58만원	54억 2,900만원
장기	801	81만원	19억 5,300만원

자료 : 국가보훈부

- 전직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군 인사체계의 특수성으로 비자발적 조기전역을 해야 하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 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그런데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2008년 구직급여(상한액 월 120만원)의 41.7% 수준인 50만원에서 지급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야 70만원으로 인상되었고(2025년 81만원),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도 2014년부터 2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1년까지 지급단가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오다 2022년에 50만원으로 인상되었음(2025년 58만원).
- 이에 비하여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의 월 상한액은 2008년 월 12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65% 인상된 월 198만원임. 현재 장기복무자의 1개월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40.9%,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은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29.3%에 불과함.
- 전직지원금의 절대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그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 부합되지 않고 있음.

<전직지원금과 구직급여 비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전역 시 평균연령 28세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지급신청 기간	전역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 58만원 장기 : 81만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중도 취업자 지원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자료: 국가보훈부

< 고용부 구직급여 상한액 (천원) >

구분		'08~'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전직 지원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58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810
구직 급여	월 상한액	1,200	1,200	1,29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증가율(%)	-	-	7.5	16.3	20	10	-	-	-	-	-	-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 시 평균연령은 28세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취업·교육·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데 그쳐 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8조의2제3항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으로 법문표현을 개정하여 전직지원금을 사실상 인상하려는 것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전직지원금의 지급기간(현행 6개월) 등 다음의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구직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2019. 10. 1. 시행)으로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되었으나, 전직지원금은 최장 6개월만을 지급 중임.

- 구직급여는 50세 미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중기복무에 해당) 근무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 시 210일(7개월), 10년 이상 근무(장기복무에 해당)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 시 240일(8개월) 지급 중임.

- 전직지원금을 도입한 2007년 개정법(법률 제8514호)은 ‘사회고용 보험으로서 실업급여 성격’인 전직지원금의 경우 구직급여의 취지²⁾와 같이 전직지원금의 수급기간을 최장 6개월로 규정한 바 있음.³⁾⁴⁾

○ 둘째, 개정안은 중기와 장기 제대군인에게 같은 금액(「고용보험법」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직장을 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음.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514호) 일부 개정, 2007. 7. 13.

4) 2007년 당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일수는 8개월(240일)이 최장(50세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었고 “전직지원금 수급기간과 동일한 6개월(180일)”의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등을 대상자 요건으로 함.
<2007년 당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관련)>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8조의2제1항단서는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⁵⁾ 개정안의 내용과 상충되므로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군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체계에 의한 비자발적 조기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5)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대군인의 날(10월 7일) 신설

- ☐ 개정안은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제대군인의 날부터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제3조의2(제대군인의 날) ① ---- ----- -----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제 대군인의 날부터 1주일을-----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21년 5월 동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 주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 개정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제대군인의 날부터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일응 수궁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다른 기념일과의 중복 우려 및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매년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바,⁶⁾ 재향군인 회원이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⁷⁾임을 감안할 때 제대군인의 날을 별도로 10월 7일에 지정할 경우 취지가 비슷한 기념일이 2일 연속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	-------	--

-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지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 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념일의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경제발전·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확립을 위해 국민적 인식을 같이 하는 날
라.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마.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가.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나. 의의나 성격이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 참고로, 2012년 제대군인주간 추진 당시 정부는 ‘제대군인의 날’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재향군인의 날’과 중복 등의 이유로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추진되지 못한 바 있음.⁹⁾

□ 둘째, 주간 행사와 관련된 입법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주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주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주간’ 등이 있는 바, 이 중 ‘성폭력 추방 주간’ 및 ‘중소기업 주간’은 따로 기념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¹⁰⁾

□ 국가보훈부는 재향군인의 날(10.8)과의 중복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민간자율성 신장이 요구되거나 순수 민간 분야의 기념일인 경우

9) 정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2002266, 「제대군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적기업주간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일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일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계획(안) 등

□ 전직지원금 지급액 인상 계획(안)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중기 복무자	55만원	71만원 (정부안 58) ('24년 대비 29.1% 인상)	85만원 ('25년 대비 19.7% 인상)	99만원 ('26년 대비 16.5% 인상)
장기 복무자	77만원	85만원 (정부안 81) ('24년 대비 10.4% 인상)	93만원 ('25년 대비 9.4% 인상)	99만원 ('26년 대비 6.5% 인상)

- (지급기간) 현재 각각 6개월 ⇨ 중기복무자 : 7개월 / 장기복무자 : 8개월

□ '24 ~ '25년 전직지원금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

구 분	'23년	'24년		'25년	
		보훈부	기재부 (국회확정)	보훈부	기재부 (정부안)
중기복무자	50만원	79.2만원 (58.4% 인상)	55만원 (10% 인상)	71만원 (29.1% 인상)	58만원 (5.5% 인상)
장기복무자	70만원	85.1만원 (21.8% 인상)	77만원 (10% 인상)	85만원 (10.4% 인상)	81만원 (5.2% 인상)

※ '25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단가 5.4%만 인상하여 반영

참고 2

전직지원금과 고용노동부 제도와의 비교

구 분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4조
대상자	비연금 중장기복무자 중 미취업자 ※ 중기자 전역당시 평균연령 28세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직자
지급신청 기간	전역후 6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액	중기 : 55만원(구직급여 28%) 장기 : 77만원(구직급여 39%)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월1,980천원
지급 상한기간	미취업기간 6개월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4개월)~270일(9개월)
중도 취업자 지원	일시금 : 잔여지급액의 1/2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급여일수 1/2이상자의 잔여지급액 1/2
고용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 고용부 구직급여 상한액 (천원) >

구분		08~13	'14	'15	'17	'18	'19	'20	'21	'22	'23	'24
전 직 지 원 금 월지급액	중기복무자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500	500	550
	장기복무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00	700	770
구 직 급 여	월 상한액	1,200	1,200	1,200	1,500	1,800	1,980	1,980	1,980	1,980	1,980	1,980
	증가율(%)	-	-	7.5	16.3	20	10	-	-	-	-	-

<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복무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에 해당)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7개월)	240일 (8개월)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참고 3

제대군인 주간 추진 현황

□ 개 요

- '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 지정,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사 추진
- 「제대군인법」 개정('21.12.9. 시행)으로 '22년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격상, 행사 발전·확대의 여건 조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행사 내용

구분	기간	내용
제1회	'12.10.8. ~10.12.	국민참여 콘서트, 유공업체 및 취창업 성공수기 시상식, 취창업 한마당, 군부대 순회교육 등
제2회	'13.10.15. ~10.19.	선포식 및 시상식, 제대군인 캠페인, 취창업 상담, 전우와의 만남의 광장, 영화상영 등
제3회	'14.10.8. ~10.14.	기념식, 정책간담회, 사진전시회, 영상공모전 시상식, 취창업 한마당, 자전거 대행진 등
제4회	'15.10.20. ~10.26.	기념식, 취창업 한마당,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국제보훈위크숍, 영상공모전 시상식 등
제5회	'16.10.18. ~10.25.	기념식 및 시상식,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업무협약, 영상공모전 시상식, 일자리 정책 포럼 등
제6회	'17.10.23. ~10.27.	기념식 및 시상식, 고용 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영상공모전 시상식 등
제7회	'18.10.15. ~10.19.	기념식, 영상공모전 시상식, 일자리 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등
제8회	'19.10.7. ~10.11.	기념식, 영상공모전 시상식, 일자리 박람회,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등
제9회	'20.10.5. ~10.8.	제대군인 응원 캠페인, 토크콘서트, 영상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일자리 강연쇼, 현장다큐 등
제10회	'21.10.5. ~10.8.	기념식, 정책 세미나, MOU(세종사이버대학), 고용우수기업 현판식, 현장다큐 등
제11회	'22.10.4. ~ 10.7.	기념행사(기념식+토크쇼)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 일자리 발굴 MOU체결식, 고용우수기업 현판식
제12회	'23.10.10. ~10.13.	기념식, 취업박람회, 고용우수기업 현판식, 간담회, 창업경진대회, 히어로즈인캠퍼스 등
제13회	'24.10.7. ~ 10.11.	제군주간 선포세러머니 및 현장행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우수기업현판식 등

참고 4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추진 경과

□ 근거법령 :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기념일	일자	주관부처	행사내용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연 혁

- '61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정('61.5.10), 설립근거 마련
- '61년도 세계향군연맹총회에서 6월 한달을 “세계향군의 달”로 결의함에 따라 '62~'63년도 재향군인회 자체 행사 개최
- 향군 사기진작 등 이유로 정부 기념일 지정 요청, '65년도 세계향군연맹 가입일(5월8일) “재향군인의 날”로 제정 ※ '65.6.8.(제49차 국무회의 의결)
- '92년 향군의 업무관장 주무부처 변경(국방부 → 국가보훈부)
- '02년 재향군인회의 건의에 따라 기념일 변경(5.8 → 10.8)

※ 10월8일은 '53년 現 재향군인회의 모태인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가 국방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날(5월은 가정의 달로 각종 기념일 집중으로 행사개최 곤란)

□ 기념 행사내용

- 본회는 중앙 기념식(정부포상, 예방 등) 거행
- 각 급회는 자체 기념식 및 친목 단합행사(자축행사, 체육대회 등) 실시